

특수대학원 학칙

- 제 정 : 2001년 1월 30일
- 개 정 : 2024년 2월 8일
- 관리부서 : 특수대학원 교학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학칙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(이하 “특수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,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9.07.28.)

제2조(특수대학원의 종류) 특수대학원에는 [별표1]의 단위대학원(이하 “각 특수대학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 (개정 2006.10.23./ 2012.1.11./2017.7.25.)

제3조(각 특수대학원의 과정) 각 특수대학원에는 학위과정으로 석사 학위과정, 비 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을 두며, 특별과정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학과 및 입학정원)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, 학과(전공) 및 입학정원은 [별표1]과 같다. (개정 2007.4.23./ 2017.7.25.)

제2장 입학, 편입학 및 재입학

제5조(입학시기) 특수대학원의 입학(편입학, 재입학 포함)시기는 매 학기 개강 이전으로 한다.

제6조(입학 및 편입학자격) ①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학 전 형에 합격하여야 한다.

1. 국내·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
2.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②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·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각 특수대학원에서 정하는 전형과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단, 학기 인정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7조(입학지원절차)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,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입학전형)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시행하며,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7.10.28.)

②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 및 각종 교류협정에 의한 위탁교육생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③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고, 위원회의 구성, 임무,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신설 2011.12.1.)

제8조의2(입학취소)(조신설 2021.08.31.) 총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,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입학허가) 입학은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

제10조(전공분야) 각 특수대학원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.

제11조(재입학) ① 학칙 제16조 2,3호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이 동일전공으로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당해 년도

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학칙 제9조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하여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길 경우 해당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(개정 2010.11.12./2017.10.28.)

② 재입학 한 학생이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.

제3장 등록, 휴학, 복학 및 제적

제12조(등록)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, 등록금(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납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1.8.29.)

② 재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학기당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점 등록의 경우 또는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점등록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학점당 수업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. (개정 2011.8.29./2017.10.28./2018.8.4.)

제13조(휴학) ① 휴학하려는 학생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휴학할 수 있다. (개정 2015.9.18./2017.1.26.)

② 휴학기간은 통산 2년까지 할 수 있다. 다만, 군입대로 인한 휴학과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휴학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15.9.18./2017.1.26.)

제14조(복학)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특수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.

제15조(자퇴)(조제목변경 2024.02.08.)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특수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7.10.28./2024.02.08.)

제16조(제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.

1.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
2.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
3. 소정기일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(개정 2011.8.29.)

제4장 수업연한, 재학연한, 교육과정, 수업 및 학점 (개정 2016.1.27.)

제17조(수업연한) ① 수업연한은 2년 6개월(5학기)로 한다. (개정 2013.6.27./ 2016.1.27.)

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업연한을 최대 2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. (개정 2013.6.27/2017.10.28.)

1. 학기당 기준학점을 초과 취득한 경우 (2014.11.7.)
2. 교류협정 등 특수한 경우
3.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한 연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특수대학원의 연관 전공으로 입학한 경우 (개정 2009.6.15./ 2013.2.13./2013.6.27./2014.11.7.)

제17조의2(재학연한) 재학연한은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 (신설 2016.1.27.)

제18조(수업 및 수업일수) ①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주간과 주말 및 원격수업으로도 실시할 수 있고,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원격대학원의 수업은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17.10.28./2018.11.30.)

②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, 이를 제1학기과 제2학기로 나눈다. (신설 2011.8.29.)

③ 1학기 개시일은 3월 1일, 2학기 개시일은 9월 1일로 한다. 다만,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. (신설 2011.8.29./2017.10.28.)

제19조(교육과정) ① 교육과정은 각 특수대학원에서 편성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. (개정 2014.11.7)

- ② 각 특수대학원 학과장·전공주임교수는 서로 협의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. (개정 2017.10.28.)
- ③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간 연계교과목 및 학부·특수대학원 연계교과목을 둘 수 있으며, 연계교과목은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4.10.)

제20조(수료학점) ① 수료 학점은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학위자격시험 신청자는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08.4.21./2014.11.7./ 2016.1.27./2017.10.28./2024.02.08.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대학원, 학과의 학위취득 유형별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. (항신설 2024.02.08.)

| 구분 | 학위논문/학위과제 | 학위자격시험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심리치료대학원 | 30학점 이상 | 36학점 이상 |
| 음악치료대학원 | 32학점 이상 | 35학점 이상 |
|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 | 30학점 이상 | 33학점 이상 |

③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 (개정 2017.10.28./항번호변경 2024.02.08.)

④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[별지 서식2]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 (항번호변경 2024.02.08.)

제21조(보충과목 이수) 특수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이 정하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.

제22조(학기당 이수학점) ① 학생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 다만, 심리치료대학원은 9학점, 음악치료대학원은 9학점,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는 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 (개정 2008.4.21./2014.11.7./2017.1.26./2017.10.28./2024.02.08.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수강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재수강하는 과목의 학점만큼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.(개정 2009.6.15./2012.1.11.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 신청 학생은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(항신설 2024.02.08.)

제23조(타 대학원 학점인정) ① 국내·외 타 대학원 및 우리대학교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6학점(연계교과목 학점은 제외)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9.4.10.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제17조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.

③ 복수학위제 협정에 의하여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인정한다. (개정 2017.10.28.)

제5장 시험 및 성적

제24조(시험)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 시험에 의한 평가를 행할 수 있다. 단, 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별도로 부과하는 과제의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25조(학업평가 및 평점) ① 성적은 시험성적, 출석사향, 레포트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, 그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.

| 등급 | 점수 | 평점 | 등급 | 점수 | 평점 | 등급 | 점수 | 평점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
| A ⁺ | 97~100 | 4.3 | B ⁺ | 87~89 | 3.3 | C ⁺ | 77~79 | 2.3 |
| A ⁰ | 94~96 | 4.0 | B ⁰ | 84~86 | 3.0 | C ⁰ | 74~76 | 2.0 |
| A ⁻ | 90~93 | 3.7 | B ⁻ | 80~83 | 2.7 | C ⁻ | 70~73 | 1.7 |
| | | | | | | F | 69이하 | 0.0 |

- ② 특수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평점 없이 P(합격) 또는 F(불합격)만으로 성적을 사정할 수 있다.(개정 2008.4.21)
- ③ 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과목별 이수인정 평점은 C-(1.7)이상 또는 P(합격)인 경우이며, 전체학기 평점평균은 B-(2.7)이상이어야 한다. (개정 2024.02.08.)
- ④ 성적불량으로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. 단,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.
- ⑤ 보충과목 이수성적은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.
- ⑥ 매학기 총 수업시간의 1/4 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. (항신설 2024.02.08.)

제6장 학위수여

제26조(학위의 수여 및 종별) ① 제28조의 논문제출자격을 갖추고 학위논문심사(구술시험 포함)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. (개정 2017.10.28./2024.02.08.)

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특수대학원별로 석사학위논문의 제출에 같음하여 학위과제(졸업연주, 졸업공연, 졸업전시회, 인턴십, 클리닉 포함) 심사 또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 (개정 2017.10.28./2024.02.08.)

제27조(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28조(논문제출자격)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
2.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2.7 이상인 자
3. 일정시험(외국어시험, 종합시험)에 합격한 자 (개정 2017.10.28.)
4.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

제29조(논문심사) ①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은 교내·외 전공학과 또는 유관학과 교수나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하며, 심사결과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.

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30조(학위종류 및 학위기) (개정 2013.2.13.)

- ① 각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류는 [별표2]과 같으며, 전문분야를 표기하여 수여한다. (개정 2017.7.25.)
- ② 학week은 [별지서식1]과 같으며 TESOL·국제학대학원 및 정원 외 외국인학생은 [별지서식1-1]과 같다. (개정 2017.10.28./ 2018.4.19.)

제7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

제31조(학생지도) 학생은 이 학칙을 준수하고 특수대학원장, 학과장, 전공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7.10.28.)

제32조(징계)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. (개정 2024.02.08.)

1.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(호신설 2024.02.08.)
2. 그 밖에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(호신설 2024.02.08.)

② 징계 대상 학생은 특수대학원위원회에 징계와 관련한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, 특수대학원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. (항신설 2024.02.08.)

③ 징계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. (항번호변경 2024.02.08.)

④ 그 외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교 「학생징계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 (항신설 2024.02.08.)

제33조(장학금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수대학원의 장학금 수여 원칙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4.11.7)

1. 학업성적 우수자

2. 초·중등학교 현직교사 및 현직 공무원

3. 각종 교류협정에 의거 입학한 학생 (개정 2014.11.7)

4. 특수대학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(개정 2014.11.7)

5. 그 밖에 특수대학원 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학생 (신설 2014.11.7)

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 (신설 2014.11.7)

제8장 연구과정, 공개강좌 및 연구생 (장제목변경 2013.6.27.)

제34조(연구과정 및 공개강좌) (조제목변경 2013.6.27.)

① 특수대학원에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정과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 (개정 2013.6.27)

②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개설시 강좌의 주제, 기간, 수강정원 등 세부사항은 특수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3.6.27)

③ 공개강좌는 원격강의로 진행할 수 있다.

④ 공개강좌의 운영은 특수대학원의 학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교내의 부속 및 부설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(항신설 2024.02.08.)

제35조(연구생) ① 특수대학원은 전형에 의해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다.

② 연구생에게는 실적에 따라 [별지 서식3]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③ 연구생의 전형 및 수업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1.8.29.)

제9장 특수대학원 직제

제36조(조직) 특수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7조(교수구성) ① 각 특수대학원에는 단위 대학원별로 학과장과 전공주임교수를 둔다. (개정 2017.10.28.)

② 학과장과 전공주임교수는 이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며, 학생의 전공과제 지정,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. (개정 2017.10.28.)

제10장 특수대학원위원회

제38조(위원회 구성) ①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대학원위원회를 둔다

② 위원장은 특수대학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일반대학원장, 기초교양대학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국제처장, 특수대학원장이 추천하는 단위대학원별 학과장 각1명 및 특수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교내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.(개정 2010.11.12./2018.2.14./2018.11.9.)

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(신설 2018.2.14.)

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,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신설 2019.12.14.)

제39조(위원회 기능) 특수대학원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입학,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전공의 설치, 폐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
3.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제규칙·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기타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40조(위원회 소집 및 의결)(조이름변경/조전면개정 2019.12.14) ① 위원장은 제39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(이메일 포함)에 의하여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.

④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제11장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

제41조(위원회 구성) ① 원격대학원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둔다. (항 번호 신설 2017.11.7.)

② 위원장은 원격대학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기획처장, 교무처장, 기초교양대학장, 원격교육지원센터장 및 원격대학원장이 추천하는 학과장 4명 이내로 구성한다. (개정 2012.1.11./ 항 번호 신설 및 개정 2017.11.7./개정 2017.12.30./2024.02.08.)

제42조(운영위원회 기능)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격대학원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
2. 원격대학원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3. 기타 원격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43조(위원회 소집)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,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

제12장 보칙

제44조(준용규정)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

제45조(시행세칙) 이 학칙시행을 위한 세칙은 특수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0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규정) 이 학칙 시행 이전의 교육대학원학칙, 경영대학원학칙, 정책대학원학칙, 디자인대학원학칙, 임상약학대학원학칙, 국제관계대학원학칙, 음악치료대학원학칙, 정보통신대학원학칙, 전통문화예술대학원학칙, TESOL대학원학칙은 폐지하며, 각 특수대학원의 종전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경과조치)

- ① 이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의 시행당시의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.
- ② 이 학칙 제26조 2항은 1999학년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 단,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라도 휴학하여 1999학년도 이후 복학한 학생은 이 학칙을 적용 받는다.

제4조(원격대학원 학칙) 특수대학원 내에 설치되어있는 원격(원격향장산업, 원격교육공학)대학원의 학칙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규정)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원격(원격향장산업, 원격교육공학)대학원의 학칙은 이를 폐지하며, 종전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변경 학칙으로 인하여 폐지된 전공의 학생에게는 전공/전문분야/학위종별의 명칭을 종전 학칙의 명칭을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경과조치)

- ① 이 변경 학칙 제4조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-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전공/전문분야/학위종별의 명칭을 입학 당시의 명칭을 적용한다.

제2조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개정 학칙은 2006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 (경과조치)

- ① 이 변경 학칙 제4조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전공/전문분야/학위종별의 명칭을 입학 당시의 명칭을 적용한다.

제2조 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경과조치)

① 이 변경 학칙 제4조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일 이전에 폐지되는 전공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대학원/전공/전문분야/학위종별의 명칭을 입학 당시의 명칭을 적용한다.

제2조 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제18조 제2항,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이 학칙 [별표 1]의 변경사항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신입생, 재학생, 복학생, 재입학생에게 일괄 적용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[별표 1]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11.7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제20조 및 제22조 중 원격대학원 음악치료전공 학기당 이수학점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22조 음악치료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칙 <2015.9.18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11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1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20조제1항 임상약학대학원의 변경사항은 2010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6.5.18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<별표1>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7.1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13조 제2항의 육아로 인한 휴학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칙<2017.7.25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[별표1], [별표2]의 개정 사항은 2018학년도 전기모집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2017.10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속전환(변경)의 적용례) 2017학년도 이전 학칙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칙 제4조(학과 및 입학정원)에 따라 2018학년도 개편학제로 해당 소속(대학원·학과·전공)을 전환(변경)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한 기일에 소속 전환(변경) 신청 및 동의서를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018년 3월 1일자로 소속을 변경하고, 학칙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학과장의 적용례) 제19조, 제31조 및 제37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2017.11.7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12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41조의 개정사항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2.14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38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18.4.19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30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후기 졸업생(2018년 8월 졸업)부터 적용한다.

② [별표 2] ②의 개정사항은 2018 학년도 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③ [별표1] 및 [별표2] ③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18.8.4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4조 [별표1]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② 2018학년도까지의 학칙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칙 제4조(학과 및 입학정원)에 따라 2019학년도 국제관계학과의 개편학제로 해당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한 기일에 소속 변경 신청서를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019년 3월 1일자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

부 칙<2018.11.9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38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18.11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18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[별표2]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19.2.15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[별표1], [별표2]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② 2018학년도까지의 학칙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칙 제4조 [별표1]에 따라 2019학년도 개편학제(인적자원개발학과, 창의콘텐츠학과)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경 신청서를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019년 3월 1일부터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

부 칙<2019.4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19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19.7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 [별표 1]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2019.12.14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08.04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 [별표1]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<2021.08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는 이 학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로 본다.

부 칙<2021.10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[별표1]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.

② [별표2]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후기 졸업생(2022년 8월 졸업)부터 적용한다.

부칙<2024.02.08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, 학과(전공), 입학정원(개정 2013.8.17./2013.10.26./2015.11.20./2016.5.18./2017.7.25./2018.4.19./2018.8.4./2019.2.15./2019.07.28./2020.08.04./2021.10.26)

| 과정 | 2019학년도 | | | 2020학년도 | | | 2021학년도 이후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|
| | 단위대학원 | 학과 | 정원 | 단위대학원 | 학과 | 정원 | 단위대학원 | 학과 | 정원 |
| 석사 학위 | TESOL· 국제학대학원 | 국제관계학과 기후환경융합학과 TESOL학과 | 62 | TESOL· 국제학대학원 | 국제관계학과 기후환경융합학과 TESOL학과 | 52 | TESOL· 국제학대학원 | 국제관계학과 기후환경융합학과 TESOL학과 | 50 |
| | 문화예술 대학원 | 전통예술학과 라이프스타일디자인 학과 예술교육학과 | 121 | 문화예술 대학원 | 전통예술학과 라이프스타일디자인 학과 예술교육학과 | 131 | 문화예술 대학원 | 전통예술학과 라이프스타일디자인 학과 예술교육학과 | 135 |
| | 심리치료 대학원 | 놀이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| 62 | 심리치료 대학원 | 놀이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| 62 | 심리치료 대학원 | 놀이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| 66 |
| | 인적자원 개발대학원 | 인적자원개발학과 커리어개발학과 | 56 | 인적자원 개발대학원 | 인적자원개발학과 커리어개발학과 | 56 | 인적자원 개발대학원 | 인적자원개발학과 커리어개발학과 | 50 |
| | 음악치료 대학원 | 임상음악치료학과 | 42 | 음악치료 대학원 | 임상음악치료학과 | 42 | 음악치료 대학원 | 임상음악치료학과 | 42 |
| | 정책대학원 | 문화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| 40 | 정책대학원 | 문화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| 40 | 정책대학원 | 문화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| 40 |
| | 원격대학원 | 향장미용학과 교육공학과 영·유아교육학과 실버비즈니스학과 음악치료학과 창의콘텐츠학과 | 200 | 원격대학원 | 향장미용학과 교육공학과 영·유아교육학과 실버비즈니스학과 음악치료학과 창의콘텐츠학과 | 200 | 원격대학원 | 향장미용학과 교육공학과 영유아교육학과 실버비즈니스학과 음악치료학과 창의콘텐츠학과 | 200 |
| 계 | 7개 대학원 | 19개 학과 | 583 | 7개 대학원 | 19개 학과 | 583 | 7개 대학원 | 19개 학과 | 583 |

※ 각 학년도 별 변경사항

- 2012학년도 2학기 : 국제관계대학원 인간안보및국제기구전공을 글로벌안보협력전공으로, 스포츠외교전공을 스포츠및공공외교전공으로 변경
- 2014학년도 1학기 : 국제관계대학원 스포츠및공공외교전공을 국제홍보및공공외교전공으로 변경
- 2016학년도 2학기 : 정책산업대학원 소비자경제금융전공 폐지, 임상약학대학원 임상약학전공을 약료경영전공으로 전공명칭 변경, 임상약학대학원 사회약학전공 폐지,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커리어상담전공 신설
- 2018학년도 1학기 : 학제개편에 따라 [별표1]의 학과로 변경
- 2019학년도 1학기 : 글로벌서비스학과 학제개편에 따라 국제관계학과로 변경
TESOL·국제학대학원과 심리치료대학원 간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함
인적자원개발대학원 인적자원정책학과를 인적자원개발학과로,
원격대학원 창의영재콘텐츠학과를 창의콘텐츠학과로 변경
- 2022학년도 1학기 : 원격대학원 영유아교육학과를 영유아교육학과로 명칭 변경

[별표2] 학과(전공)별 학위종별 및 전문분야 (신설 2017.7.25./개정 2017.10.28./2018.4.19./2018.8.4./2018.11.30./2019.2.15./2021.10.26)

① 2017학년도 입학생까지 적용하는 학위종별

| 과정 | 단위대학원 | 전공 | 학위종별 | 전문분야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석사 학위 | 정책산업대학원 | 문화예술행정전공 | 문화예술행정학 석사 | 문화예술행정 |
| | | 사회복지전공 | 사회복지학 석사 | 사회복지 |
| | | IT융합비즈니스전공 | IT융합비즈니스학 석사 | IT융합비즈니스 |
| |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| 화예디자인전공 | 디자인학 석사 | 화예디자인 |
| | | 미용예술전공 | 미용예술학 석사 | 미용예술 |
| | 임상약학대학원 | 약료경영전공 | 약학 석사 | 약료경영 |
| | 국제관계대학원 | 국제홍보및공공외교전공 | 국제학 석사 | 국제홍보및공공외교 |
| | | 글로벌안보협력전공 | 국제학 석사 | 글로벌안보협력 |
| | |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전공 | 문화매니지먼트학 석사 |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 |
| | | 기후환경융합전공 | 기후환경학 석사 | 기후환경융합 |
| | 음악치료대학원 | 임상음악치료전공 | 음악치료학 석사 | 임상음악치료 |
| | 전통문화예술대학원 | 전통무용전공 | 문화예술학 석사 | 전통무용 |
| | | 전통음악전공 | 문화예술학 석사 | 전통음악 |
| | | 전통식생활문화전공 | 문화예술학 석사 | 전통식생활문화 |
| | TESOL대학원 | TESOL전공 | TESOL석사 | TESOL |
| | 사회교육대학원 | 놀이치료전공 | 놀이치료학 석사 | 놀이치료 |
| | | 유리드믹스전공 | 유리드믹스학 석사 | 유리드믹스 |
| | | 피아노페даго지전공 | 피아노페даго지학 석사 | 피아노페даго지 |
| |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| 인적자원개발전공 | 인적자원개발학 석사 | 인적자원개발 |
| | | 리더십교육전공 | 리더십교육학 석사 | 리더십 |
| | | 커리어상담전공 | 상담학 석사 | 커리어상담 |
| | 원격대학원 | 향장미용전공 | 향장학 석사 | 향장미용 |
| | | 교육공학전공 | 교육학 석사 | 교육공학 |
| | | 영·유아교육전공 | 유아교육학 석사 | 영·유아교육 |
| | | 실버비즈니스전공 | 실버비즈니스학 석사 | 실버비즈니스 |
| | | 아동문화콘텐츠전공 | 아동문화콘텐츠학 석사 | 아동문화콘텐츠 |
| | | 음악치료전공 | 음악치료학 석사 | 음악치료 |
| 창의교육비즈니스전공 | | 창의교육예술학 석사 | 창의교육비즈니스 | |

②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및 소속 전환(변경)자에게 적용하는 학위종별

| 과정 | 단위대학원 | 학과 | 세부전공 | 학위종별 (전문분야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석사 학위 | TESOL · 국제학대학원 | 글로벌서비스학과 | 국제홍보·공공외교전공 | 국제학 석사 (국제홍보·공공외교) |
| | | | 국제개발협력전공 | 국제학 석사 (국제개발협력) |
| | | 기후환경융합학과 | 기후환경학전공 | 기후환경학 석사 (기후환경학) |
| | | TESOL학과 | TESOL전공 | TESOL 석사 (TESOL) |
| | 문화예술대학원 | 전통예술학과 | 전통무용전공 | 예술학 석사 (전통무용) |
| | | | 전통식생활문화전공 | 문화예술학 석사 (전통식생활문화) |
| | | | 전통음악전공 | 예술학 석사 (전통음악) |
| | |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 | 화예디자인전공 | 예술학 석사 (화예디자인) |
| | | | 뷰티디자인전공 | 예술학 석사 (뷰티디자인) |
| | | 예술교육학과 | 유리드믹스전공 | 예술학 석사 (유리드믹스) |
| | | 피아노교수학전공 | 예술학 석사 (피아노교수학) | |
| | 심리치료대학원 | 놀이치료학과 | 놀이치료전공 | 심리학 석사 (놀이치료) |
| | | 미술치료학과 | 미술치료전공 | 심리학 석사 (미술치료) |
| | 인적자원개발대학원 | 인적자원정책학과 | 인적자원개발전공 | 인적자원개발학 석사 (인적자원개발) |
| | | | 조직컨설팅전공 | 인적자원개발학 석사 (조직컨설팅) |
| | | 커리어개발학과 | 리더십교육전공 | 교육학 석사 (리더십교육) |
| | | 커리어상담전공 | 상담학 석사 (커리어상담) | |
| | 음악치료대학원 | 임상음악치료학과 | 임상음악치료전공 | 음악치료학 석사 (임상음악치료) |
| | 정책대학원 | 문화행정학과 | 문화정책전공 | 행정학 석사 (문화정책) |
| | | | 예술경영전공 | 행정학 석사 (예술경영) |
| | | |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전공 | 경영학 석사 (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) |
| | | 사회복지학과 | 사회복지전공 | 사회복지학 석사 (사회복지) |
| | | 다문화정책전공 | 사회복지학 석사 (다문화정책) | |
| | 원격대학원 | 향장미용학과 | 향장미용전공 | 향장학 석사 (향장미용) |
| | | | 뷰티케어전공 | 향장학 석사 (뷰티케어) |
| | | 교육공학과 | 교육공학전공 | 교육학 석사 (교육공학) |
| | | 영·유아교육학과 | 영·유아교육전공 | 교육학 석사 (영·유아교육) |
| 실버비즈니스학과 | | 실버비즈니스전공 | 경영학 석사 (실버비즈니스) | |
| 음악치료학과 | | 음악치료전공 | 음악치료학 석사 (음악치료) | |
| 창의영재콘텐츠학과 | 창의영재콘텐츠전공 | 인문학 석사 (창의영재콘텐츠) | | |

③ 2019학년도 입학생 및 소속 전환(변경)자에게 적용하는 학위종별

| 과정 | 단위대학원 | 학과 | 세부전공 | 학위종별 (전문분야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석사 학위 | TESOL · 국제학대학원 | 국제관계학과 | 국제홍보 · 공공외교전공 | 국제학 석사 (국제홍보 · 공공외교) |
| | | 기후환경융합학과 | 기후환경학전공 | 기후환경학 석사 (기후환경학) |
| | | | 환경 · 경제전공 | 기후환경학 석사 (환경 · 경제) |
| | TESOL학과 | TESOL전공 | TESOL 석사 (TESOL) | |
| | 문화예술대학원 | 전통예술학과 | 전통무용전공 | 예술학 석사 (전통무용) |
| | | | 전통식생활문화전공 | 문화예술학 석사 (전통식생활문화) |
| | | | 전통음악전공 | 예술학 석사 (전통음악) |
| | |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 | 화예디자인전공 | 예술학 석사 (화예디자인) |
| | | | 뷰티디자인전공 | 예술학 석사 (뷰티디자인) |
| | | 예술교육학과 | 유리드믹스전공 | 예술학 석사 (유리드믹스) |
| | 피아노교수학전공 | | 예술학 석사 (피아노교수학) | |
| | 아동예술교육전공 | | 교육학 석사 (아동예술교육) | |
| | 심리치료대학원 | 놀이치료학과 | 놀이치료전공 | 심리학 석사 (놀이치료) |
| | | 미술치료학과 | 미술치료전공 | 심리학 석사 (미술치료) |
| | 인적자원개발대학원 | 인적자원개발학과 | 인재개발전공 | 인적자원개발학 석사 (인재개발) |
| | | | 조직컨설팅전공 | 인적자원개발학 석사 (조직컨설팅) |
| | | 커리어개발학과 | 리더십교육전공 | 교육학 석사 (리더십교육) |
| | | | 커리어상담전공 | 상담학 석사 (커리어상담) |
| | 음악치료대학원 | 임상음악치료학과 | 임상음악치료전공 | 음악치료학 석사 (임상음악치료) |
| | 정책대학원 | 문화행정학과 | 문화정책전공 | 행정학 석사 (문화정책) |
| | | | 예술경영전공 | 행정학 석사 (예술경영) |
| | | |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전공 | 경영학 석사 (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) |
| | | 사회복지학과 | 사회복지전공 | 사회복지학 석사 (사회복지) |
| | 다문화정책전공 | | 사회복지학 석사 (다문화정책) | |
| 원격대학원 | 향장미용학과 | 향장미용전공 | 향장학 석사 (향장미용) | |
| | | 뷰티케어전공 | 향장학 석사 (뷰티케어) | |
| | 교육공학과 | 교육공학전공 | 교육학 석사 (교육공학) | |
| | 영유아교육학과 | 영유아교육전공 | 교육학 석사 (영유아교육) | |
| | 실버비즈니스학과 | 실버비즈니스전공 | 경영학 석사 (실버비즈니스) | |
| | 음악치료학과 | 음악치료전공 | 음악치료학 석사 (음악치료) | |
| 창의콘텐츠학과 | 창의콘텐츠전공 | 인문학 석사 (창의콘텐츠) | | |

※ 학과(전공)별 변경사항

- 원격대학원 영유아교육학과를 영유아교육학과, 영유아교육전공을 영유아교육전공, 전문분야 영유아교육을 영유아교육으로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명칭을 변경함

석제 호

학 위 기

○ ○ ○
년 월 일생

학과 (전공) :

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○○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
○○학 석사(전문분야 :)의 자격을 얻었으므로
이를 증명함.

20 년 월 일

숙명여자대학교 ○○대학원장 (학위명) ○ ○ ○ (인)
위의 증명에 의하여 ○○학 석사(전문분야 :)의 학위를 수여함.

20 년 월 일

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(학위명) ○ ○ ○ (인)

학위번호 : 숙명여대 (석) _____

Sookmyung Women's University

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of
Graduate School of TESOL and International Studies
has conferred upon

○ ○ ○

in recogni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, the degree of

Master of TESOL
(specialization in TESOL)

with all the rights, privileges, and honors thereto pertaining.

The date.

○ ○ ○ . Ph.D.

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TESOL and International Studies

○ ○ ○ . Ph.D.

President of Sookmyung Women's University

문서확인번호 :

수 료 증 명 서

성 명 :
생 년 월 일:
소 속:
학 과 (전공):
입 학 년 월 일:
수 료 년 월 일:

위의 사실을 증명함

20 년 월 일

숙명여자대학교 총 장

석제 호

증명서

성명 ○ ○ ○
년 월 일생

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○○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
년 월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.

20 년 월 일

숙명여자대학교 ○○대학원장 (학위명) ○ ○ ○ (인)